

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의 지정요건(제74조제2항 관련)

구 분	강의실(m ²)	이론교육 강사(명)	조종실습 강사(명)
지정 요건	50	1	2

비고

1. 교육기관은 교육생의 이론 및 실습시간의 확인을 위한 전산시스템과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. 다만, 쇄석기, 콘크리트펌프(이동식으로 한정한다) 또는 준설선의 경우 실습장이 아닌 해당 건설기계가 설치된 다른 장소에서 실습을 할 때에는 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.
2. 교육기관은 빔프로젝트, 책상, 의자 등 교육에 적합한 비품을 갖추어야 한다.
3. 교육기관은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 과정에 적합한 건설기계를 1대 이상 보유해야 한다.
4. 이론교육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.
 - 가.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의 기계공학계열 학과 졸업자
 - 나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또는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
 - 다. 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 자격(건설기계운전, 양중기기계운전)이 있는 사람
5. 조종실습 강사는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 과정에 적합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득한 후 건설기계 조종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.
6. 굴착기, 로더, 지게차, 불도저, 천공기 및 타워크레인의 조종실습 강사는 해당기종 중 상위규격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득한 후 건설기계 조종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도 실시할 수 있다